

##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.

2024년 4월 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. 대상 조합

조합명	소재지	이사장	설립일자
한국자동차정비업 협동조합연합회	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홍길 3, 5층	공 석	'93.06.11

### 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: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

### 3. 원인이 되는 사실

- 위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('17.6.22)되었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('18.8.14)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어 해산명령을 사전통지('23.6.12) 받은 바 있음

- 이후, 소명자료를 제출(23.6.23)하였으나 이사장 공석, 총회 미개최, 공동사업 수행계획 미비 등 여전히 활동 재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조합의 해산을 명함

#### 4. 근거법령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,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

#### 5. 고지내용

-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
-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6.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(044-204-7432). 끝.